

특허 선진5개 특허청(“IP5¹⁾”) 협력 최근 동향



세계 특허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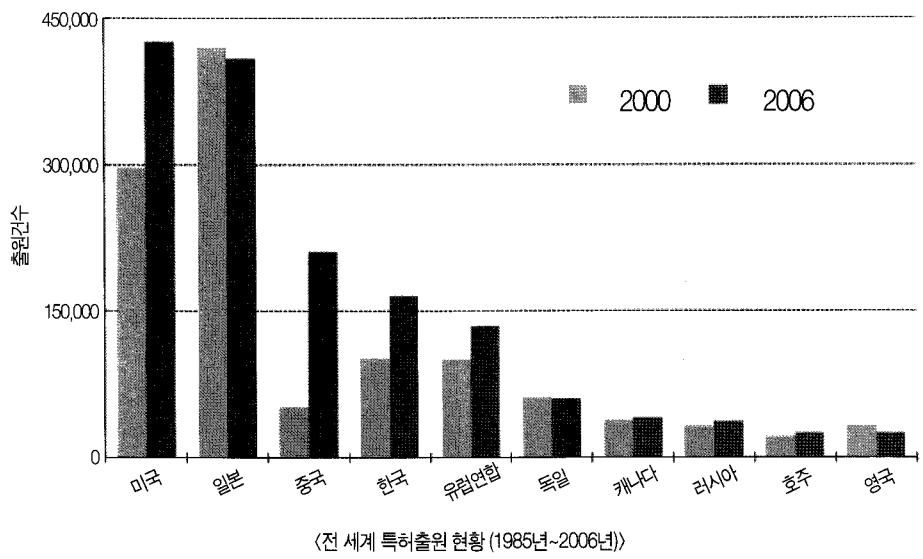
2010년 9월 15일 발간된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²⁾)의 특허보고서³⁾에 의하면 '08년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는 19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995년 이래 200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5%를 넘는다.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증감이 없었고, 한국 1.1%, 일본 1.3%, 중국은 18.2%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영국은 6.5% 감소세를 나타냈다. PCT 국제출원은 '09년 중국이 29.1% 증가하였으나,

1) Intellectual Property 5. 지식재산 분야의 G5를 의미하며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5개 특허청을 지칭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World Patent Report : A Statistical Review 2010, A Statistical Review는 '06년부터 매년 WIPO가 세계 특허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발간한 통계연차보고서로서 '10.9.15 2010년판을 공식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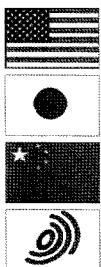


미국 10.8%, 독일 11.3%, 스웨덴은 13.4% 감소하여 PCT 시스템 도입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4.5%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IP5 특허청으로 대표되는 선진 5개 특허청으로부터의 출원은 1,453,943건으로 전체 출원의 76.2% 차지했다. 동 보고서는 선진국과 특허출원 비율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데, 선진국(High income economies)의 특허출원 비율(74.1%)은 GDP 비중 (58.7%)에 비하여 15.4% 높음이 특징이다.

특허출원의 국제화도 계속되는 추세이다. 즉, 타국에의 출원 비중 증가 등 특허활동의 국제화가 증가되고 있는데, 타국에의 출원 비중이 '95년 35.7%에서 '08년 44%로 2.6% 증가했으며, 이는 '08년의 경우 44%의 출원인이 자국 외의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했음을 보여 준다.

외국인(non-residence) 출원은 일본은 전 세계의 26.3%, 미국 21%, 중국 10.7%, 한국 9%, 독일은 7.1% 차지했으며, 중국 출원인은 외국에서 출원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멕시코, 태국, 페루 등 개도국은 외국에서의 출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같은 국제적인 특허출원의 급증현상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대표되던 국가 간 무역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 선진국은 이제 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지재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을 위한 지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 Act)' 입법 및 지식재산 집행조정관(대통령실) 신설('08)
-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및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3) 등을 통해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產立國) 정책 추진
- '국가지재권전략 강요' 수립('08) 및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혁신 국가 3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채택('09, 제11차 全人代)
-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 추진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현황〉

바꾸어 말하면, 각국이 세계주요시장에서 특허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세계특허출원의 증가와 출원의 글로벌화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특허출원의 증가는 각국의 특허심사적체(patent backlog)⁴⁾를 가중시키고 특허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특허심사적체는 출원증가와 함께 기술의 진보와 복합기술 출원의 증가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 방어적 목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사례의 증가를 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최근 일부 출원인이 ‘특허출원 중’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결과가 늦춰지도록 하는 경향도 심사적체의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허심사 적체는 출원인의 비용증대와 및 특허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심사부담 증가로 인한 특허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특허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쟁업체의 연구 리스크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10년 3월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국 특허청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3국 특허청(EPO, JPO, USPTO)에서 심사 대

기기간이 1년 증가하면 13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허청 간 심사결과를 상호활용(mutual recognition) 함으로써 중복출원의 60%에 대해 심사결과 상호활용이 이루어지면 5년 후에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심사적체기간이 48% 감소한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IP5 특허심사공조(work-sharing) 체제의 출범

국제적인 특허홍수(patent flooding)라 불리는 세계적인 특허 출원 증가로 인해 심사적체, 심사처리 기간 장기화, 부실특허 허여, 특허 분쟁 등의 문제 발생 등 현안은 개별 국가의 특허청이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동일 발명의 복수 국가 출원으로 인한 중복 심사 업무(duplicated work) 해소를 위해 국가 간 업무공조(Work-Sharing)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83년부터 3국 간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체제를 가동해 왔던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한국, 중국 특허청을 포함한 5개 특허청장들이 ‘07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5개국 특허 협력 체제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고, 지재권 분야가 당면한 세계적 위기 상황 및 업무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08년 10월에는 한국 특허청 주도로 제주도에서 제2차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IP5 간 특허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큰 그림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 마련되었다. 즉, 5개 특허청 간 특허심사 공조·협력(work-sharing)의 구체적 비전으로서 5개 청 간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의 안정성 확보가 채택되었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심사결과의 ‘품질(Quality)’ 및 ‘적시성(Timeliness)’의 확보가 요구되었으며, 비전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10대 기반 프로젝트(10 Foundation Projects)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World Patent Report : A Statistical Review 2010에 의하면, 심사 미착수건(potentially pending application)의 지속적 증가
• ‘08년 잠재적 심사 미착수건은 594만 건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
- 일본 237만 건, 미국 125만 건, 유럽 58만 건, 한국 47만 건 순임

주도국	기반 프로젝트(Foundation Project)
유럽(EPO)	특허분류, 특허문헌 검색DB
일본(JPO)	특허출원서식, 심사결과 공유시스템
한국(KIPO)	특허심사관 훈련정책, 외국어 자동번역
중국(SIPO)	심사실무·품질관리 지침, 특허통계지표
미국(USPTO)	심사 지원도구, 검색전략 공유

〈IP5 10대 기반 프로젝트 현황〉

IP5 특허청 간 협력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 → ‘고위급(차장급) 회의’ → ‘IP5 청장 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반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관성 높은 과제끼리 clustering하여 cross-functional 실무 그룹(WG: Working Group)을 구성함으로써, 특허분류(WG1), 특허행정 정보화(WG2), 특허심사정책(WG3) 3개 분야의 기능별 실무그룹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IP5 특허청 간 심사노하우 공유 및 심사실무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이 한국 특허청 주최로 대전에서 개최(‘09.10.20~23)되었으며, 이후 IP5 심사관 워크숍이 정례화되어 제2회 심사관 워크숍은 유럽 특허청(EPO) 주최로 ‘10.10.2 ~ 9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국의 실제 선행기술 검색과정을 라이브 서치(live search)로 보여주면서 5개국 특허청 간 상호 심사실무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 특허 심사공조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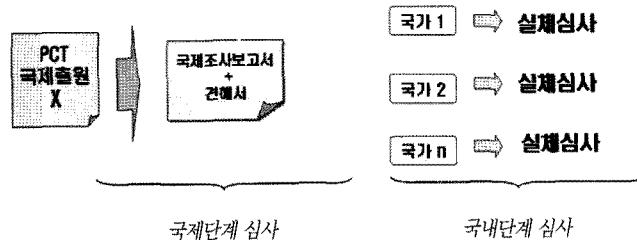
IP5 특허청 간 특허 심사공조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허협력조약(PCT⁵⁾), 특허심사하이웨이(PPH⁶⁾), 전략적 신속심사(SHARE⁷⁾)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모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여러 특허청 간에 특허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가능케 한다.

a. 최초의 업무공조(work-sharing) 프로그램: PCT 제도

각 국의 중복심사 제거를 위한 방안으로, 1970년 PCT제도 탄생(‘78년 시행)

-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심사 제거로 효율적인 특허심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PCT를 통해 하나의 국제단계 심사결과가 여러 국가의 실체심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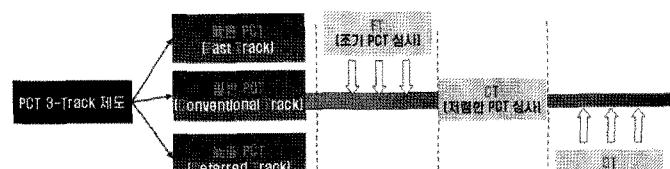
국제단계 심사 결과 활용



PCT는 1970년에 체결된 이래 큰 제도의 변경 없이 약 40년간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급변해 가는 국제경제 및 기술환경에 따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09년 5월 WIPO에서 개최된 PCT 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PCT 3-track 제도라는 PCT 개혁안을 제시했다. PCT 3-track 제도란 PCT 국제 특허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출원인이 빠른 심사 · 일반심사 · 늦출심사의 세 가지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속한 권리획득을 원하는 출원인은 빠른 심사를, 저비용으로 PCT 절차를 밟고 싶은 출원인은 일반심사를, 국제단계를 연장하고 고품질 국제조사를 받고 싶은 출원인에게는 늦출심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08년 9월 WIPO 연례 정기총회에서 특허법의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는 WIPO 산하 B+ 그룹에 가입했다. 따라서, PCT 3-track 제도는 우리나라가 B+ 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PCT 3-track 제도 개념도)

5) Patent Cooperation Treaty

6) Patent Prosecution Hig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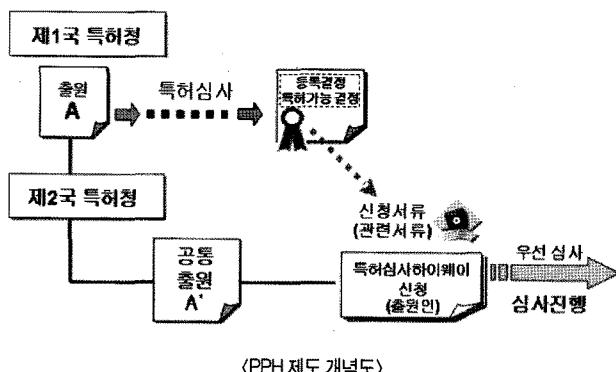
7)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Rapid Examination

b.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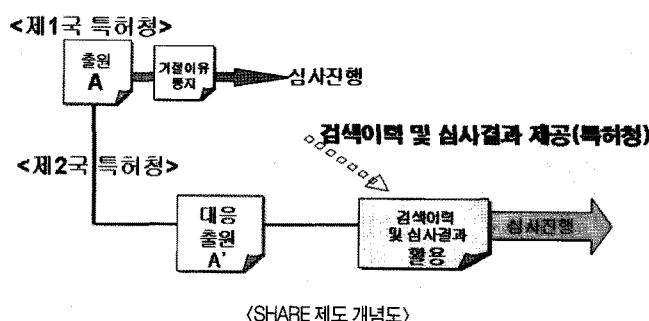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제1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 제2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 특허청은 '08년 미국, 일본과 PPH를 시행한 이래, '10. 9월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 캐나다, 영국, 러시아, 핀란드, 독일을 포함하여 총 8개국 특허청과 PPH를 시행하고 있다.

- 양국의 공통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 제2국은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조기 심사하는 제도
⇒ 선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중복심사를 제거하고 심사품질을 제고



c. 전략적 신속심사(SHARE: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Rapid Examination)

- 제2국이 양국의 공통 출원에 대하여 제1국의 심사정보(검색이력 및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 타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중복심사를 제거하고 심사품질을 제고
※ '07.11월 3국 회의에서 미국이 처음 제안한 후, '09.9월 최초로 한-미간에 시행



전략적 신속심사는 국가 간 심사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협력 제도. 제2국이 양국의 공통 출원에 대해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한미 특허청 간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및 연료전지분야에 대해 '09.9.1.부터 1년 간 시범실시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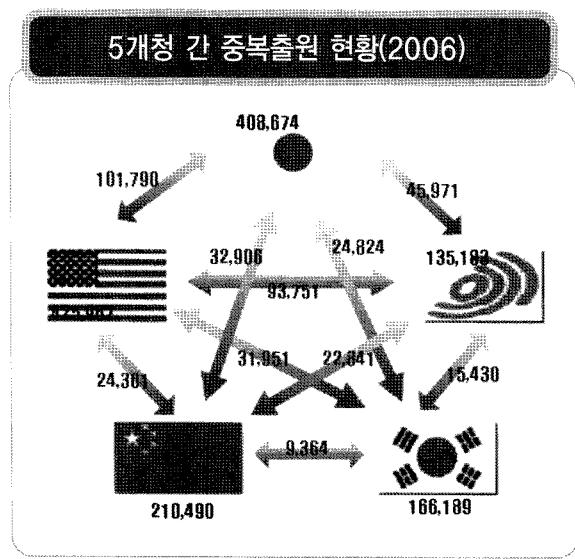
IP5 체제의 성과 및 기대효과

한국 특허청의 IP5 선진 특허청과의 성공적인 특허심사 협력체제에 정착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

먼저 지난 25년간 미·일·유럽 특허청 간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지재권 국제질서 체제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5국 체제(특허의 'G5')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재권 국제질서 형성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특허심사 환경의 완전 개방과 대외적 주시로 인한 관련 법·제도, 시스템, 심사역량의 글로벌화 및 이를 통한 선진화 효과가 예측된다.

더불어 상호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앞당기는 심사공조 프로젝트인 “특허심사하이웨이”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조기 획득 및 출원 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미국의 경우, 특허획득에 평균 26개월이 걸리나, 국가 간 심사 협력을 통해 약 4개월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첨단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해외 특허권 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IP5 공통출원서식 (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이 도입되어 우리 특허 출원인이 사용하는 양식이 미·일·유럽에 그대로 통용되게 됨으로써 우리 출원인의 해외 특허 출원 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강한 특허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특허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대외 신

인도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부수적인 효과라 할 것이다.

IP5 특허청의 시장은 전 세계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며 동일기술이 이들 국가에 중복 출원되는 건수가 연간 약 40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중복 특허를 심사할 때 상호 간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작제를 줄이고 심사처리를 앞당긴다면, 글로벌 지재권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8만 건이 넘는 특허출원건수를 자랑하며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10년 9월 WIPO 총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많은 개도국들로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 제도를 리드하고 형성하는 Rule Maker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지재권 제도·시스템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진정한 지재권 선진그룹의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때가 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2010년 8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됨과 동시에 IP5 협력체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IP 강국 코리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진석

현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심판관, 심사관 역임
영국 세필드 대학교 법학박사(특허법 전공)